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용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9825

발의연월일: 2023. 2. 3.

발 의 자:노용호・이명수・엄태영

김용판 • 박덕흠 • 지성호

김희곤 · 김성원 · 김영식

유경준 · 정희용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3. 3. 24. 시행)됨에 따라,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규정은 삭제하고,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인허가의제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 등).

법률 제 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를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인·허가등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때 시공자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인·허가등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부터"는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다.

제40조의2제1항 중 "제40조제3항"을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40조제3항에 따른"을 "인·허가

등의"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적용례) 인허가등의 의제를 위한 행정청 간 협의기간 및 협의 간주에 관한 사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안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 제40조(다른 법률의 허가 등의 의 제)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제) ① -----인가를 받았을 때(시장・군수・ 구청장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서 를 작성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 신 고 · 심사 · 동의 · 지정 · 해제 및 협의(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가 된 것으로 보고, 사업시 (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 행인가가 고시되었을 때에는 다 에 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이 인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 등이 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 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 15. (생략) 1. ~ 15. (현행과 같음) ②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 ②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 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인ㆍ허 를 신청할 때 시공자가 선정되 어 있지 아니하여 인ㆍ허가등 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사업시

의제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기

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

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

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

시행인가를 신청할 때에 시공자

가 선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관 계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 하는 기한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시행인가를 할 때 제1항 각 호 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서류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 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 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u>④</u> (생 략) <신 설> <삭 제>

-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법 제24조제4

제40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 전한 일괄협의회) ① 시장·군수
·구청장은 <u>제40조제3항</u>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수 있다.

② <u>제40조제3항에 따른</u>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 석하게 하여야 한다.

	항 전단 중 "요청을 받은 날부
	터"는 "요청을 받은 날(제2항의
	경우에는 관계 서류가 인ㆍ허가
	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도달한 날을 말한다)부터"로 한
	다.
쉐	— 40조의2(인·허가등 의제를 위
	한 일괄협의회) ①
	「행정기본법」 제2
	4조제3항
	① 인·허가등의
	<u> </u>